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수행지침

제정 2023. 6.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4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1. "지원사업"이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 홍원이 수행하는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의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말한다.
- 2. "지원기관"은'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3. "지원기관등"은 지원기관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별도로 선정한 용역 업체를 말한다.
- 4.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란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5. "신청기업"이란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 6. "선정기업"이란 제7조에 따라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지원기관이 지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원기관은 매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세부 지원사업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2장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안내

- **제4조(안내)** ① 지원기관등은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기 업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1.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조건
 - 2.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내용
 - 3.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절차

- ② 지원기관등은 신청기업이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신청 또는 취소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신청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1.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3.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용약관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4.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취소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3장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신청 등

- 제5조(신청) 신청기업은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4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접수)** ① 지원기관등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접수하기 전에 필수항목 작성 여부, 동의 여부, 서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지원기관등은 신청서류가 미흡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경우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선정) ① 지원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 또는 지원 이력 등을 검토 및 심사하여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② 지원기관은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 기준과 선정 방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정하고 필요시 별도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선정여부 통보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지원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기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취소)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허위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 2. 신청기업 또는 선정기업이 제9조에 따른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시작 전에 제4조 제2항 제 4호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지원기관에게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서식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취소를 지원기관에게 알린 경우

제4장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제공

제9조(서비스 제공) 지원기관등은 제7조에 따른 선정기업에게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장 개선조치 이행

- 제10조(개선조치 이행 요청) ① 지원기관등은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후 개선조치 필요사항이 발견 또는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을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원기관등은 제1항의 요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개선조치 일정 및 이행 기한 등이 포함된 개선조치 이행 계획서 등의 자료 제출을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개선조치 이행 기한) ①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기업은 개선조치 이행 기한을 제10조 제 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기업은 제1항의 이행 기한 종료 전에 지원기 관과 협의하여 이행 기한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지원기관은 개선조치 이행이 다음 해에 이루어질 경우 지원사업 수행 용역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을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12조(1년 내에 개선조치 이행 완료가 어려운 사항)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기업은 제10조 제1 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개선조치 이행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개선조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개선조치 요청사항과 이행 완료가 어려운 사유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제13조(개선조치 이행여부 확인) ① 지원기관등은 개선조치를 요청한 기업의 개선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선조치 진행상황, 이행결과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원기관등은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기업의 미대응 등으로 개선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행여부 확인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4조(개선조치 이행) 지원기관등의 개선조치 이행 요청에 해당 기업은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5조(분쟁에 관한 소송)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관한 분

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16조(이용약관) ① 지원기관은 지침에 개정이 발생할 경우 이용약관에 미치는 사항을 검토 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② 지원기관은 이용약관 변경 30일 전에 선정기업에 변경사실을 알리고, 변경 후에는 선정기업에 변경된 내용을 알리고 설명하며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지원기관은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개정일자 이후에 신청한 신청기업에 적용되고 개정 전에 신청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지원기관에 알리고 지원기관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 ⑤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지원기관 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지원기관이 지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통계 관리)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관리한다.

- 1. 정보보호 지원을 신청한 기업
- 2. 정보보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 3. 정보보호 지원 신청을 취소한 기업
- 4. 정보보호 지원을 제공받은 기업
- 5. 개선조치 대상 기업
- 6. 개선조치 미이행 기업
- 7. 개선조치 부분이행 및 전체이행 기업

부 칙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접수된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신청부터 적용한다.

*필수항목

				210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신청서							
정보보호 지원 세부 사업명		※ 예) 중소기업 원격보안점검 (내서버돌보미) 운영					
신청기업 기본정보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형태		업종				
	홈페이지 주소						
신청인	성명*		직위				
	부서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	성명*		직위				
	부서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요청내용 및 일정*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귀중

※ 제출 서류

-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신청서 1부
-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서류(예시 : 중소기업 확인서)]

_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정보보호 지원 세부 사업명	※ 예) 중소기업 원격보안점검 (내서버돌보미) 운영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신청 접수 ○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취소 ○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제공 ○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조치 ○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통계 작성 및 관리 ○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설문조사 ○ 정보보호 지원서업 계획 수립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o 필수항목: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신청인 이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신청기업명, 신청기업 대표자명, 신청기업 주소, 신청기업 사업자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o 선택항목: 법인번호, 신청기업 업종, 신청기업 형태, 신청기업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직위, 담당자 부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o 필수항목: 3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제2항 [별표 1]에 근거 o 선택항목: 세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완료까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o 위탁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o 수탁자 : ※ 수탁업체명 ※ 개선조치 이행이 다음 해에 이루어질 경우 수탁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o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중 신청 접수, 서비스 제공, 개선조치, 설문 조사 관련 부분					
- 선택항목 : □	마용에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항목은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개인정보 필수항목은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이용약과 및 이용약과 동의서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서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귀중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 2023.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4 및 과학기 술정보통신부'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통신망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다.

- 1. "지원사업"이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 원이 수행하는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의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말한다.
- 2. "지원기관"은'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3. "지원기관등"은 지원기관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별도로 선정한 용역 업체를 말한다.
- 4.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란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5. "신청기업"이란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 6. "선정기업"이란 제7조에 따라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기업을 말한다.
-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개정 및 적용) ① 지원기관은 이 약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 약관을 제공하고 안내한다.
 - ② 지원기관은 지침에 개정이 발생할 경우 이용약관에 미치는 사항을 검토하여 이용약관을 개

정할 수 있다.

- ③ 지원기관은 이용약관 변경 30일 전에 선정기업에 변경사실을 알리고, 변경 후에는 선정기업에 변경된 내용을 알리고 설명하며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지원기관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개정일자 이후에 신청한 신청기업에 적용되고 개정 전에 신청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지원기관에 알리고 지원기관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 ⑥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지원기관 내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또는 지원기관이 지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안내

- **제4조(안내)** ① 지원기관등은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1.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조건
 - 2.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내용
 - 3.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절차
 - ② 지원기관등은 신청기업이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신청 또는 취소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신청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1.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3.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용약관 동의서
 - 4.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취소 신청서

제3장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신청 등

- 제5조(신청) 신청기업은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4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접수)** ① 지원기관등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접수하기 전에 필수항목 작성 여부, 동의 여부, 서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지원기관등은 신청서류가 미흡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경우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선정) ① 지원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 또는 지원 이력 등을 검토 및 심사하여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② 지원기관은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 기준과 선정 방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정하고 필요시 별도의 선정을 위한 위원 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선정여부 통보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지원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기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그결과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취소)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허위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 2. 신청기업 또는 선정기업이 제9조에 따른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시작 전에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지원기관에게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서식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취소를 지원기관에게 알린 경우

제4장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제공

제9조(서비스 제공) 지원기관등은 제7조에 따른 선정기업에게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장 개선조치 이행

- 제10조(개선조치 이행 요청) ① 지원기관등은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후 개선조치 필요 사항이 발견 또는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을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원기관등은 제1항의 요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개선조치 일정 및 이행 기한 등이 포함된 개선조치 이행 계획서 등의 자료 제출을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개선조치 이행 기한) ①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기업은 개선조치 이행 기한을 제10조 제1 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기업은 제1항의 이행 기한 종료 전에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이행 기한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지원기관은 개선조치 이행이 다음 해에 이루어질 경우 지원사업 수행 용역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을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12조(1년 내에 개선조치 이행 완료가 어려운 사항)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기업은 제10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개선조치 이행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개선조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개선조치 요청사항과 이행 완료가 어려운 사유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제13조(개선조치 이행여부 확인) ① 지원기관등은 개선조치를 요청한 기업의 개선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선조치 진행상황, 이행결과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원기관등은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기업의 미대응 등으로 개선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가 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행여부 확인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4조(개선조치 이행) 지원기관등의 개선조치 이행 요청에 해당 기업은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5조(분쟁에 관한 소송)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관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피수하모

				** 色 I る -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취소 신청서							
기본정보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1			
	형태		업종				
	홈페이지 주소						
	성명*		직위				
신청인 정보	부서			-			
	연락처	전화번호*					
	신국시	이메일*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 취소 사유*							
신청인 :		년 월 :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귀중							
※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